### [별첨 1]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

1

#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(핀다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		금감원 김	남독총괄국
	이재균 이사	김기한 과장	02-2100-2630	.—	02-3145-8300
핀다 	(010-8875-0885)	류성재 사무관	02-2100-2632	고윤광 선임	02-3145-8008

- □ (서비스 주요내용) 소비자가 FINDA 앱을 통해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대출조건(금리, 한도 등)을 한 번에 확인하고,
  - 이 중 원하는 대출 조건 선택 및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
- □ (규제특례 신청내용)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인정 필요
  - 「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」상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(1사전속 주의)해야 함\*
    - \* 동 규제는 **금융회사의 관리·감독 책임을 강화**하여 **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**하기 위해 **도입**('10.4월)
- □ (심사결과) 혁신성, 소비자 편익 및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 심사기준\*을 충족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
  - \*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§13④
- □ (기대효과)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들이 제시하는 대출조건을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기회 제공
  - **금리투명성**을 통한 금융회사의 자발적 **금리 인하** 및 다양한 대출상품 선택이 가능해져 금융소비자의 비용부담 완화
- □ (향후일정) 금융회사와의 전문 연동개발 등을 거쳐 금년 6월경 서비스 출시 예정

### ※ 향후 법령, 제도개선 반영 사항

- 테스트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, 필요시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주의 폐지 고려 ( $\lceil$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 $\rfloor$  개정 등)

#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·신청 서비스(비바리퍼블리카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금융소	소비자정책과	금감원 김	<b>  독총괄국</b>
	윤채영 차장	김기한 과장	02-2100-2630	이준호 국장	02-3145-8300
	(010-9076-7619)	류성재 사무관	02-2100-2632	고 <del>윤</del> 광 선임	02-3145-8008

- □ (서비스 주요내용) 여러 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대출 상품의 개인별 확정금리를 토스 앱에서 확인하고,
  - 선호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**대출 신청**까지 **간편**하게 진행
- □ (규제특례 신청내용)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인정 필요
  - 「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」상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(1사전속 주의)해야 함\*
    - \* 동 규제는 **금융회사의 관리·감독 책임을 강화**하여 **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**하기 위해 **도입**('10.4월)
- □ (심사결과) 혁신성, 소비자 편익 및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 심사기준\*을 충족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
  - \*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§13④
- □ (기대효과) 토스 앱에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을 일목 요연하게 비교함으로써, 소비자는 대출상품 선택권 확보
  - 금융회사 간 금리·상품 경쟁 촉진에 따른 소비자 이익 확대
- □ (향후일정) 제휴사와의 API 연동 개발 등을 거쳐 금년 6월경부터 확정금리 비교서비스 출시 예정

#### ※ 향후 법령, 제도개선 반영 사항

- 테스트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, 필요시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주의 폐지 고려 (「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」 개정 등)

## 중금리 맞춤대출 간단 비교 서비스(NHN페이코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		금감원 긷	<b> </b> 독총괄국
	이윤수 책임	김기한 과장	02-2100-2630	이준호 국장	02-3145-8300
토에로/HN	(031-8038-2226)	류성재 사 <del>무</del> 관	02-2100-2632	고윤광 선임	02-3145-8008

- □ (서비스 주요내용) 대출이 필요한 중·저신용자 등이 PAYCO를 통해 필요자금, 대출용도 등 간단한 조건 설정 후 대출을 신청하면
  - PAYCO와 제휴된 **다수의 금융회사**로부터 **대출상품을 추천**받아 **소비자가 비교·협상·신청**할 수 있는 서비스
- □ (규제특례 신청내용)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인정 필요
  - 「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」상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(1사전속 주의)해야 함\*
    - \* 동 규제는 **금융회사의 관리·감독 책임을 강화**하여 **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**하기 위해 **도입**('10.4월)
- □ (심사결과) 혁신성, 소비자 편익 및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 심사기준\*을 충족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
  - \*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§13④
- □ (기대효과) PAYCO에서 대출조건을 간편하게 비교·협상·신청 함으로써 대출상품을 알아보는 시간 및 복잡한 절차 단축 가능
  - **소비자**가 **협상 주도권**을 가짐으로써 가능한 **낮은 금리**로 다양한 업권 및 금리대의 **대출상품 선택** 가능
- □ (향후일정) 금융회사 제휴 및 서비스 연동개발 등을 거쳐 금년9월경부터 대고객 서비스 출시 예정

### ※ 향후 법령, 제도개선 반영 사항

- 테스트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, 필요시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주의 폐지 고려 ( $\lceil$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 $\rfloor$  개정 등)

#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[핀셋]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		금감원 긷	<b> </b> 독총괄국
핀셋	조영민 대표	김기한 과장	02-2100-2630	이준호 국장	02-3145-8300
- 건엣 	(010-5338-7050)	류성재 사무관	02-2100-2632	고윤광 선임	02-3145-8008

- □ (서비스 주요내용) 소비자의 신용 및 소득에 맞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(금리, 한도 등)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,
  - 대출 전후 필요한 부가서비스(신용관리, 부채관리)를 추가 제공
- □ (규제특례 신청내용)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인정 필요
  - 「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」상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(1사전속 주의)해야 함\*
    - \* 동 규제는 **금융회사의 관리·감독 책임을 강화**하여 **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**하기 위해 **도입**('10.4월)
- □ (심사결과) 혁신성, 소비자 편익 및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 심사기준\*을 충족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
  - \*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§13④
- □ (기대효과) 개인의 신용과 재무현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상품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확대
  - 개인별 부채를 통합 관리함으로써, 연체 등으로 인한 차주의 신용상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
- □ (향후일정) 금융회사와 대출모집 위탁계약 체결 등을 거쳐 금년6월경 서비스 출시 예정

### ※ 향후 법령, 제도개선 반영 사항

- 테스트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, 필요시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주의 폐지 고려 (「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」 개정 등)

##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(핀테크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		금감원 김	<b>감독총괄국</b>
피데그	임선일 대표	김기한 과장	02-2100-2630	이준호 국장	02-3145-8300
핀테크 	(010-3659-9235)	류성재 사무관	02-2100-2632	고윤광 선임	02-3145-8008

- □ (서비스 주요내용) 소비자가 플랫폼(렌킷)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소비자의 신용정보와 기타 데이터\* 등을 반영한 대출조건을 제공하고,
  - \* 해당차량 사고내역, 운전자 정보, 운전경력 등
  - 이후, 소비자 동의 시 금융회사에 **동 조건의 확약을 요청**
- □ (규제특례 신청내용)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인정 필요
  - 「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」상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(1사전속 주의)해야 함\*
    - \* 동 규제는 **금융회사의 관리·감독 책임을 강화**하여 **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**하기 위해 **도입**('10.4월)
- □ (심사결과) 혁신성, 소비자 편익 및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 심사기준\*을 충족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
  - \*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§13④
- □ (기대효과) 소득, 재직 및 자동차 관련서류를 렌킷에서 자동 취득하여 소비자가 선택한 금융회사에 전달함으로써 편리성 증대
  - 차량정보와 운전정보 등 분석을 통해 소비자는 **자신에게 맞는**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가입 가능
- □ (향후일정) 금융회사 제휴 및 API 연동개발 등을 거쳐 금년 6월경부터 서비스 출시 예정

### ※ 향후 법령, 제도개선 반영 사항

- 테스트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, 필요시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주의 폐지 고려 ( $\lceil$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 $\rfloor$  개정 등)

#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(코스콤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자본시장과		기업 담당자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경		금감원 자본	<sup>본</sup> 시장감 <del>독</del> 국
그 시 코	김미선 팀장	안창국 과장	02-2100-2650	문상석 팀장	02-3145-7590		
코스콤 	(02-767-7727)	오형록 사무관	02-2100-2937	민중후 선임	02-3145-7591		

- □ (서비스 주요내용) 비상장 초기 혁신·중소기업의 주주명부 관리및 장외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
  - ① (현행) PC, 엑셀 등 수기 작업을 통한 주주명부 관리 (개선) 블록체인을 활용한 주주명부 실시간·최신화 서비스
  - ② (현행) 비상장 주식 장외 거래 시에는 불투명한 1:1 거래 (개선) 블록체인을 통한 장외 1:1 거래 지원
- □ (규제특례 신청내용)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\* 인가 필요
  - \* 비상장 기업 주식은 금융투자상품(지분증권)에 해당
- □ (심사결과)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하나 거래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부여하여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

### 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투자중개업 인가 특례를 인정하되, 사업 계획대로 해당 블록체인 플랫폼의 비상장 주식 거래에 대한 기술적 구현\* 필요(구현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 취소)
- \* 신청인 서비스는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등 상법상 주식 미발행 회사의 주식 이전의 대항요건 등에 대한 기술적 구현이 필요
- □ (기대효과) 초기 혁신·중소기업을 포함한 비상장기업의 주주명부관리 및 비상장 주식 거래의 편의성이 증대
  - 특히, 주주명부의 블록체인화를 통해 비상장 주식 거래의 보안성·신속성 제고가 기대
- □ **(향후일정)** 서비스 관련 시스템 개발을 거쳐 금년 11월 서비스 개시 예정

### ※ 향후 법령, 제도개선 반영 사항

-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경과(동 서비스의 기술적 구현 등)를 보아가며 비상장 주식 거래, 주주명부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

#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(카사코리아 등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자본시장과 금융위 자산운용과		_	년시장감독국 난운용감독국
㈜카사코리아	예창완 대표 (010-9473-9760)	안창국 괴장	02-2100-2650	문상석 팀장	02-3145-7590
㈜국민은행 ㈜하나은행	행 행 산탁 산탁	조대성 사무관	02-2100-2653	민중후 선임	02-3145-7591
(주)코를 코산탁		강영수 과장	02-2100-2660	이종기 팀장	02-3145-6711
㈜한국자산신탁   ㈜한국토자신탁		노소영 사무관	02-2100-2662	진시원 선임	02-3145-6732

- □ (서비스 주요내용)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에게 발행・유통하는 서비스
  - \* ①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체결 → ②신탁회사는 신탁수익증권을 공모 발행 → ③발행된 수익증권은 신탁회사가 보관, 신탁회사는 수익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표시하는 전자증서를 투자자에 교부 → ④투자자는 신청인이 개설한 플랫폼을 통해 다자간 매매체결방식으로 전자증서 거래
- □ (규제특례 신청내용) 자본시장법상 규제 특례인정 필요
  - ①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허용(§110①)
- ② 플랫폼 개설을 위해 거래소 허가 규정에 대한 예외 인정(§373)
- ③ 증권거래 중개를 위한 **투자중개업 인가에 대한 예외** 인정(§11)
- □ (심사결과)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하나 시장 개설 허가 특례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·금융질서 안정성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검증을 시행한 후 특례인정 여부 검토

### 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금융위와 협의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'모의테스트 점검TF'를 구성하고 플랫폼 운영 등에 관한 충분한 모의테스트를 실시하고, 투자자보호 및 거래소 운영 등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점검
- □ (기대효과) 일반투자자의 중·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보안성·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
- □ (향후일정) 서비스 관련 시스템 개발을 거쳐 금년 6~9월 중모의투자를 통한 매매체결시스템 모의테스트 실시

### ※ 향후 법령, 제도개선 반영 사항

- 모의테스트 결과에 따라 서비스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, 허용하는 경우 부가 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안건 재상정 추진(19.10월)

## Drive Thru 환전·현금인출 서비스(우리은행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은행과		금감원 은행감독국	
<i>(</i> 尽)이라이해	김선우 부부장	전요섭 과장	02-2100-2950	김병칠 부국장	02-3145-8022
( <del>기</del> 주디근앵	(02-2002-4356)	서지은 사무관	02-2100-2954	김태웅 선임	02-3145-8027

- □ (서비스 주요내용) Drive Thru 요식업체(카페, 패스트푸드점 등) 및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원화, 외화(100만원 미만)를 수령
  - 은행 지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자동차 안에서 또는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여 편리하게 환전, 현금인출이 가능한 서비스
- □ (규제특례 신청내용) 「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」상 규제 특례인정 필요(§3)
  - 은행은 예외로 인정하는 업무 외에는 은행 고유의 **본질적인** 업무\*를 제3자에게 위탁 불가
    - \* 입금·지급, 외국환 업무는 은행업의 본질적 업무
  - ⇒ 은행 지점이 아닌 요식업체 등이 **환전 및 현금 인출 서비스**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례 인정 필요
- □ (심사결과)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하여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되,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부여
  - 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  - **제휴사와의 계약 체결** 후 「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」 §4에 따른 서식<sup>\*</sup>에 맞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**보고**할 것
    - \* 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, 비용·편익 분석, 제휴업체가 수탁업무를 적절히 수행 가능한지 여부, 은행의 자체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관련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등
- □ (기대효과) 금융서비스와 Drive Thru 서비스업의 인프라가 결합되어, 이용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증대
  - O Drive Thru 서비스는 요식업에 주로 적용되었으나, 환전·인출 서비스와 결합을 통해 은행서비스 이용가능 공간 및 시간 확대
- □ (향후일정) 제휴사 선정·계약, 시스템 개발(약 6개월 소요) 등을 거쳐 금년 10월부터 서비스 출시 예정

### ※ 향후 법령, 제도개선 검토 사항

-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경과를 보아가며, 본질적 업무 중 **예외적으로 위탁이** 가능한 업무에 포함(금융위 고시 개정) 방안 검토

#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, AI 신용정보 서비스더존비즈왼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		금감원 신용	용정보평가실
디즈비포이	김길태 차장	이한진 과장	02-2100-2620	권민수 실장	02-3145-7850
너 <u>손</u> 비스온 	(02-6233-5347)	송현지 사무관	02-2100-2621	윤동진 수석	02-3145-7831

- □ (서비스 주요내용) 비외감기업 등의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의 제공 및 신용평가·위험관리 모형의 개발
  - 회계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**회계 빅데이터** 등 신용 정보를 **금융회사** 등에 **전송**하는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
  - 이와 함께, 실시간 회계 데이터를 분석하는 머신러닝 기법의 신용평가 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·판매
- □ (규제특례 신청내용)「신용정보법」상 규제 특례인정 필요
  - 신용조회사(CB:Credit Bureau)가 아닌 비금융회사에 기업에 관한 신용 정보 제공 업무 및 신용평가모형 등의 개발·판매 업무를 허용
    - \*「신용정보법」§4, §50② i
- □ (심사결과)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하여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하되, 신용정보산업의 책임성 제고 및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부여
  - 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  - 「신용정보법」상 **신용조회회사**가 **준수**해야할 **의무사항을** 준수하고, 신용 정보의 단순 가공 외에 **기업신용등급평가업무**는 수행하지 않도록 함
  - 「신용정보법」개정을 통해 **기업정보조회업자**의 **법적근거**가 **마련**되고, **비금융회사**의 **진입**이 **허용**될 경우, 지체없이 **기업정보조회업 허가**를 신청
- □ (기대효과) 적시성과 차별성이 높아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은 세무회계정보\*가 금융권에 새롭게 유통·활용
  - \* 결제신뢰도, 외상매출 회수기일 안정성, 거래처 이탈여부, 활동성 등 기존 재무제표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
  - 금융권이 이러한 회계정보를 활용할 경우, 비외감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, 금융권의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가능
- □ (향후일정) 금년 11월 중 정식 서비스 출시 예정
  - ※ 향후 법령, 제도개선 반영 사항
  - 현재 비금융회사에 정보조회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「**신용정보법」개정 추진** 중